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2
----------	-----

2024. 6. 24.(월)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6월 11일

-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일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 함으로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2)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 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음. 그러나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조항이 있지만, 특수임무유공자는 제외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에서는 총 4종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음.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

구 분	자격	월 지급액	인원	예산액
참전유공자	본인	6만원	6,637명	4,778,640천원
독립유공자 유족	65세 이상 선순위자	3만원	224명	80,640천원
전몰군경 유족	65세 이상 선순위자	3만원	1,092명	393,120천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6만원	49명	29,400천원

-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희생한 분들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도지사 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3조제2 <u>호 ·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자</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2(보훈명예수당)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훈부에 등록된 도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산출(47명) * '24.4월기준

나. 추계 결과 :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64,760천원 소요 예상

- ('24년) (^{당초}49명×30천원×4월)+(^{1회추경}49명×60천원×8월)] = 29,400천원
- ('25년 이후) 47명 × 60천원 × 12개월 = 33,84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9,400	33,840	33,840	33,840	33,840	164,760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9,400	33,840	33,840	33,840	33,840	164,7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9,400	33,840	33,840	33,840	33,840	164,760
	지방세	29,400	33,840	33,840	33,840	33,840	164,7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